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른 지급보류 제도의 보완>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742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른 지급보류 제도의 보완	3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7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9. 6.
- (3) 회 부 일 : 2024. 9.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보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고, 지급보류 처분 이후 불법개설 기관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는 법조항의 일

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른 지급보류 제도의 보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보류를 취소하고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② (생략) <u><신설></u>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u>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	④ ----- ----- -----

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⑤ -----

-----제4항에-----
-----절차-----

-----.

나. 검토의견

□ (지급보류조항) 현행법 제11조¹⁾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동법 제11조의5제1항²⁾에서는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이 불법개설(사무장병원 등)로 「의료법」 제33조제2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³⁾

< 「의료법」 제33조제2항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의료급여법」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의료급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3) 다만,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업무는 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있음.

- 이러한 지급보류조항은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것이고,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바람직한 급여체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예산 및 의료급여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또한 현행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르면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이 불법개설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에 대하여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연 3.5%)에 따른 이자만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⁴⁾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⁵⁾을 선고하고, 현행법 조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음(2021헌가19, 2024.6.27.선고).⁶⁾

- 헌법재판소는 의료급여비용의 지급보류는 해당 병·의원뿐만 아니라 종사자, 환자 및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및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

4)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것임(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 참조).

5) 2024.6.27. 2021헌가19

6) p.12 참고1 참조.

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율도 없는 등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의료급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음.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 >

주요 쟁점	결정 결과
○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27조) - 유죄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야 함	○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 않음 - 부당이득 환수절차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임 •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있는 병원이 일정기간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유죄판결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의미) 경찰의 수사결과로 지급보류 처분이 가능함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37조제2항)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함	○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함 -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며, 형사 유무죄 확정 시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잠정적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시적 규정 필요 • 하급심 무죄 판결 시 일정부분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 있음 - 무죄 확정 시 지급보류 기간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이자, 지연손해금) 지급 규정 필요함 - (의미) ① '지급보류 처분 취소' 법령에 명시 필요 ② 하급심에서 무죄선고 시 일정부분 지급 필요 ③ 무죄 확정 시 상당한 보상(이자, 지연손해금) 필요

- 이와 유사하게,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지급보류)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개정이 이루어졌음.⁷⁾

< 국민건강보험법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불합치 결정('23.3.23.선고)	지급보류 개정('24.8.21.시행)
■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관한 명시적 규정 필요 ■ 하급심 무죄 선고 시 일정부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 있음 ■ 무죄 확정 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이자 등)필요(당시 국세환급금 이자율 2.9%)	■ '지급보류 처분 취소' 명시 ■ 하급심 무죄가 선고되면 이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 지급보류 취소 시 지연이자(5%) 지급 → 민법 제379조(법정이자)

-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 사실이 수사결과로 확인되었다면, 추후 불기소 처분 등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처분청은 이를 지급보류처분의 직권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뿐 취소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급보류처분이 철회되는 데 그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 보류된 의료급여비용 및 이에 대하여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연 3.5%)에 따른 이자만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생각건대, 지급보류처분이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른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후 일련의 관련 절차

7) pp.13-14. 참고 2, 3 참조.

차 진행에 따라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명시적 규율이 필요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 잠정적 지급보류상태를 해제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임.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급여비용의 지급보류액은 약 118억 원이고, 무죄 판결 확정 등으로 인한 보류 후 지급된 경우는 총 54건으로 약 105억 원이었음.

< 연도별 지급보류액 및 보류 기관, 보류 후 지급 사유 >

2024.10.기준(단위: 원, 개소, 원)

연도	지급보류액	기관수			보류 후 지급 사유			
		보류금액 (미존재)	보류금액 (존재)	계	무죄판결 확정	불기소	기타	계
계	11,820,185,016	159	29	188	19	33	2	54
2019	3,286,407,055	37	3	40	7	13	1	21
2020	1,537,507,680	45	5	50	3	6	1	10
2021	382,580,020	26	2	28	2	4	0	6
2022	1,645,498,200	9	2	11	1	7	0	8
2023	281,350,550	32	9	41	0	0	0	0
2024	4,686,841,511	10	8	18	6	3	0	9

자료: 보건복지부

□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개정안 제11조의5제4항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⁸⁾까지 고려하면 불송치(혐의없음

8)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④ 법 제11조의5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

또는 죄가 안됨)나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의 경우까지도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사유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주문한 바와 같이 지급보류의 처분요건과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요건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임.

□ (법원의 무죄 판결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 개정안 제11조의5제3항에서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급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동법 제23조⁹⁾에 따라 기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보류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임.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비율) 헌법재판소는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였고,

이에 개정안은 이자율에 관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한 사례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죄판결의 확정
2.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9)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하급심 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 시 의료급여비용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처분 취소 시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5%)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등 개정안 취지에 동의함.¹⁰⁾

문 의 처
02)6788-5497

10) 대한의사협회도 동 법률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참고1	「의료급여법」 헌법불합치 결정 요지
-----	---------------------

헌법재판소 2024. 6. 27 자 2021헌가19 결정[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판시사항

- 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 가.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하여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함께 지급보류기간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나.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참고2	「국민건강보험법」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
-----	-----------------------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3.3.23.)
 - 하급심 패소 시 일부 지급규정 및 취소사유 발생 시 적절한 보상 부재
 - 법률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코자 개정 시한까지 효력 유지('24.12.31.까지)

결정 주요 내용 (2018헌바433, 2019헌가22(병합), 2020헌바503(병합))

- ① 지급보류 조항은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임
 -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으로 유죄판결 확정 전(前) 요양급여비용 미지급을 위법이라 보기 어려움
- ② 지급보류 처분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
- ③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 지급할 필요 있음
- ④ 무죄 확정 시 지급보류 기간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이자 등) 지급 규정이 필요함

□ 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및 개정내용

헌법불합치 결정('23.3.23.선고)	지급보류 개정('24.8.21.시행)
■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관한 명시적 규정 필요	■ '지급보류 처분 취소' 명시
■ 하급심 무죄 선고 시 일정부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 있음	■ 하급심 무죄가 선고되면 이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 무죄 확정 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이자 등)필요(현재 국세환급금 이자율 2.9%)	■ 지급보류 취소 시 지연이자(5%) 지급 → 민법 제379조(법정이자)

참고3	「국민건강보험법」 헌법불합치 관련 조항 개정 내용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② (생략) <u><신설></u>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 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 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된 협회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하 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 다.</u>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	<u>④</u> ----- ----- ----- ----- ----- -----

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단은 지급보
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
된-----

-----.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⑤ -----

지급 절차 등에

-----.